



제422회 국회 (임시회)
제2차 국회운영위원회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복지위 소관업무에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〉

■ 김한규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119호)

2025. 2.

국 회 운 영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 상 수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한규 · 강경숙 · 정준호 · 이성윤 · 김종민 · 위성곤
한준호 · 서미화 · 이기현 · 문대림 · 민병덕 · 박정현
의원(12인)

2. 제 안 일 : 2024. 12. 2.

3. 회 부 일 : 2024. 12. 3.

※ 의안번호 : 6119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인구위기 문제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고, 이에 따른 상임위원회 또한 존재하지 않음.

그러나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하여 경제와 안보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예상됨. 따라서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, 국가의 중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부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됨.

이에 인구미래부 신설과 더불어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부분도 수정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‘보건복지위원회’ 소관업무에 ‘인구미래부

소관에 속하는 사항' 조항을 명시하고자 함(안 제37조제1항제13호).

※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한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118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“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”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제1항제13호).

[표-1]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. 1. ~ 12. (생략) 13. 보건복지위원회 가. (생략) <u><신설></u> 나. (생략) 14. ~ 17. (생략) ② (생략)	제37조(상임위원회와 그 소관) ① ----- -----.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----- 가. (현행과 같음) <u>나. 인구미래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</u> 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 14. ~ 17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
현행법 제37조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
동 개정안은 저출산·고령사회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, 인구구조변화 대응, 인구전략에 관한 사무 등을 관장하는 “인구미래부”를 신설하는 내용의 「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김한규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2206118)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,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인구미래부의

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담당하도록 규정하려는 취지임.

현행법은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주로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른 정부부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¹⁾, 정부조직 개편이나 주요 국가기관의 설치·폐지 시에는 「국회법」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.

따라서 동 개정안은 인구미래부 신설 여부에 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논의 경과에 맞추어 검토·조정될 필요가 있음. 다만, 인구미래부 신설 시 ①인구정책과 기존 보건복지부 소관업무²⁾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개정안과 같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방안, ②타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방안 또는 ③인구미래부를 소관하는 별도의 상임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014

1) 국회사무처, 국회법해설, 2024.7. p.181

2) 「정부조직법」 제39조(보건복지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·자활지원·사회보장·아동(영·유아보육은 제외한다)·노인·장애인·보건위생·의정(醫政) 및 약정(藥政)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